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35호 2022. 7. 1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0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78호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삼척시 공고 제78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791호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 12
- 삼척시 미로면 공고 제1호 도로의 지정공고 ----- 19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 -10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1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231-11	강원도 삼척시 오분1길 114 (오분동)	20220715	신규부여	20090626	일련번호 방식적용 (오분길분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 공고 제2022-778호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삼척시장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변경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구분(명칭)에 따라 조례상의 구분(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련 내용 삭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련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 안 제2조제3항, 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7. 15. ~ 8. 4.(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교통과(교통행정부서)
- 전화 : 033-570-3938
- FAX : 033-570-3145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교통과(교통행정부서)
 - 전화 : 033-570-3938
 - FAX : 033-570-3145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78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2.07.14. ~ 2022.07.28.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2.07.29.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동○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요청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오저리 27
		목조/스레트 (1층:44.29㎡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14.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고 제2022-78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2.07.14. ~ 2022.07.28.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2.07.29.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두○
	주소 (대장상주소)	268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68	
	목조/스레이트 (1층:37㎡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14.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고 제2022-78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2.07.14. ~ 2022.07.28.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2.01.29.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기○
	주소 (대장상주소)	268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68
		목조/스레이트 (1층:18.8㎡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14.

삼 척 시 장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2-791호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6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조정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 07. 15.

삼척시장

1. 대상문화재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1	보물	삼척 죽서루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 외
2	사적	삼척도호부 관아지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 외
3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 외

2. 조정사유

-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3. 조정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2. 07. 15 ~ 2022. 08. 04.(20일간)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협의를 거쳐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2년 08월 04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 제출장소
 - 방문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 우편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 ※ 문의처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담당자(☎033-570-3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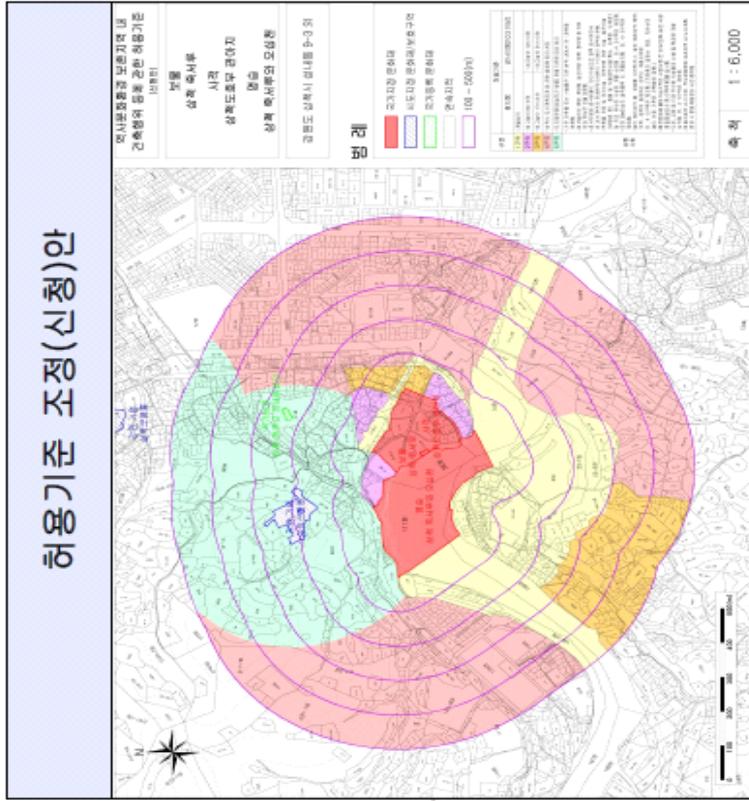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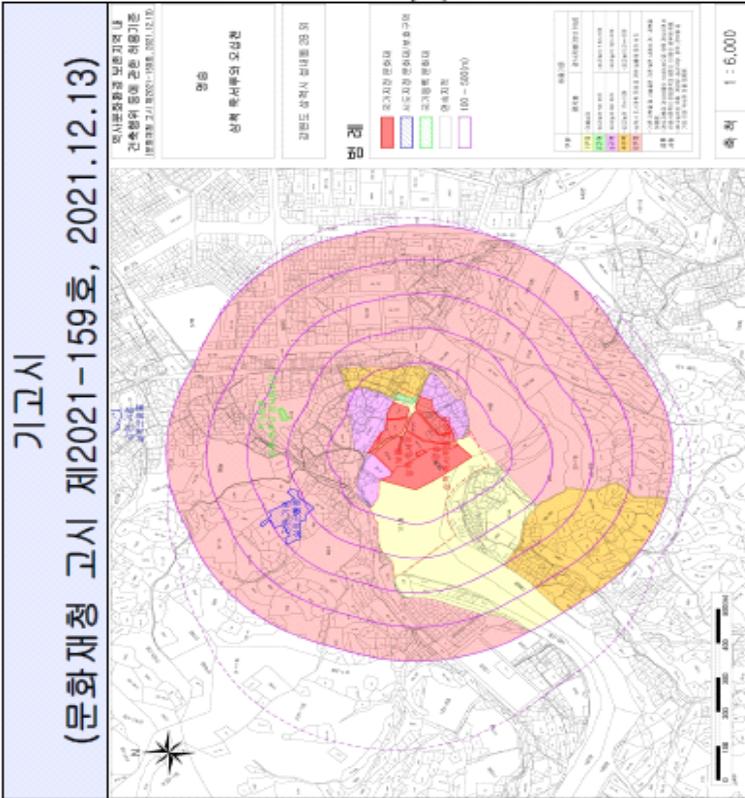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도면



나. 허용기준 조정 내용

기고시(2021.12.13.)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p> <p>○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조정(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 도시정문화재(실직군 왕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p>○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p> <p>○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단, 4·5구역은 제외함.</p> <p>○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단, 4·5구역은 제외함.</p> <p>○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단, 4·5구역은 제외함.</p> <p>(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표본·시굴·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응)를 실시함.</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단, 4·5구역은 제외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성 명(법인, 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의견내용

◦ 의 견 사 항

-

상기 본인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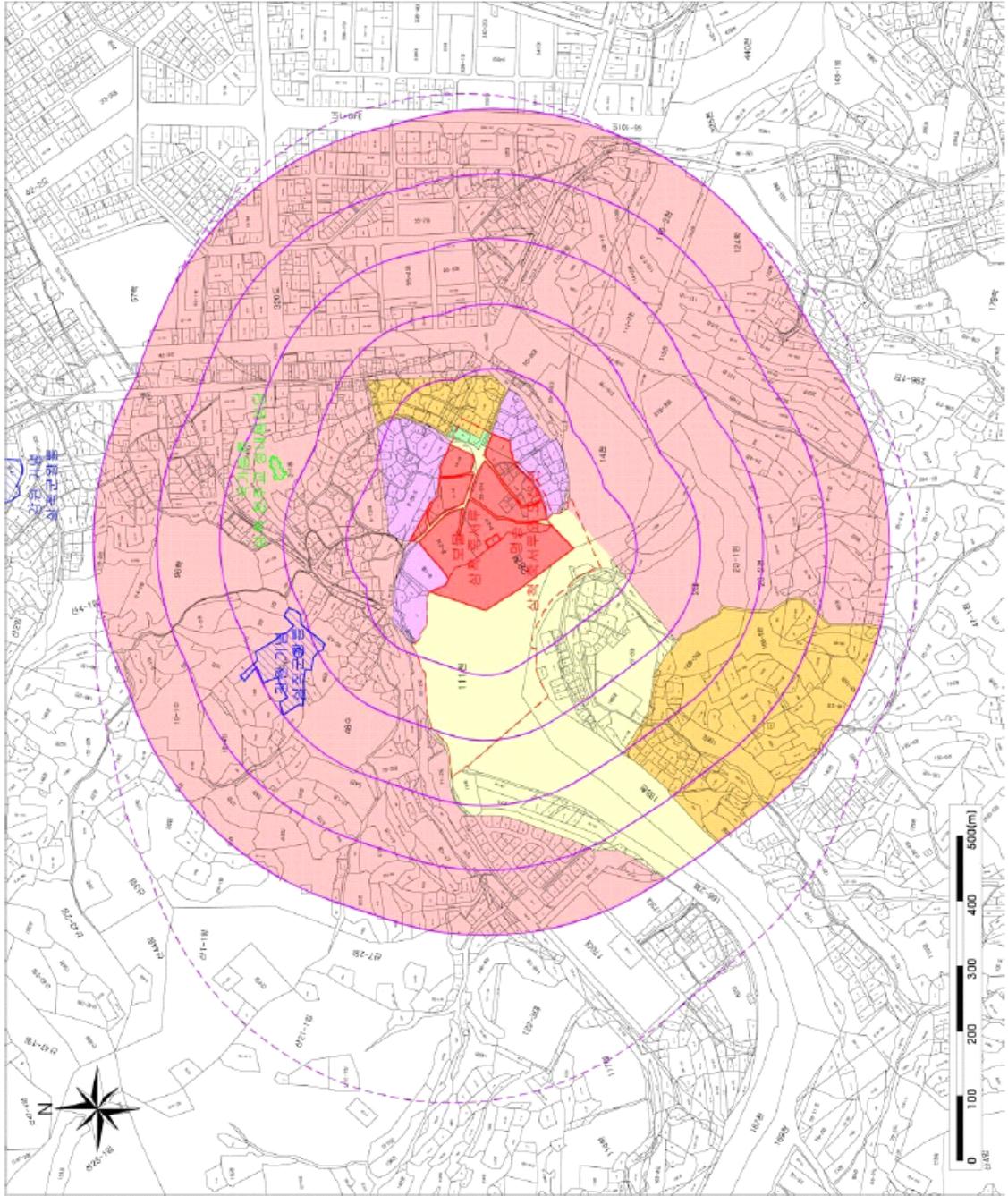
의견제출자 : (인)

삼척시장 귀하

■ 삼척 죽서루(보물) · 삼척도호부 관아지(사적)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명승)

<기고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 2021.12.13)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 외

범례

- 국가 지정 문화재
- 시도 지정 문화재/보물구역
- 국가등록 문화재
- 연속지적
- 100 ~ 500(m)

이용기준 권사지점(10.3 이상)

구분	범치범	이용기준
1구역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점(10.3 이상)
2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물구역	국가지점(10.3 이상)
3구역	국가등록 문화재	국가지점(10.3 이상)
4구역	연속지적	국가지점(10.3 이상)
5구역	100 ~ 500(m)	국가지점(10.3 이상)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 또는 강원도 문화유산과 협의하여 10.3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 또는 강원도 문화유산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 목적, 용도, 용적률, 용적률 등 기타 이용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축척 1 : 6,000

삼척시 미로면 공고 제2022-1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362-6번지 상의 건축신고 시 도로로 지정된 아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삼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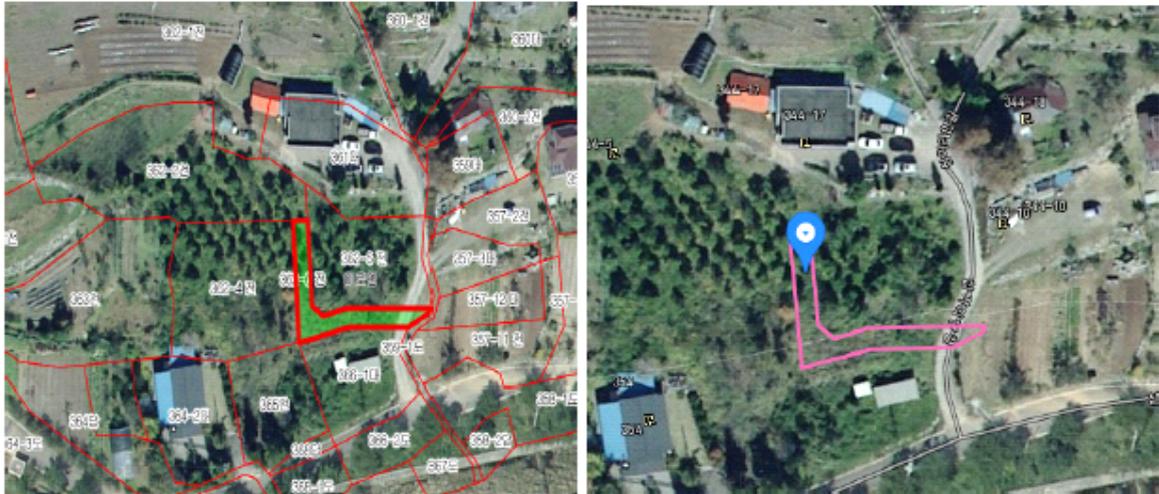
- 1. 제 목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3. 공고내역(도로지정내역)

구분	도로위치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점유자)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비 고
				성 명		
도로 지정			227			
	미로면 삼거리 362-6	2,122	112.96	윤*순	동의	
	미로면 삼거리 362-6	108	114.04	이*정	동의	

- 4. 공고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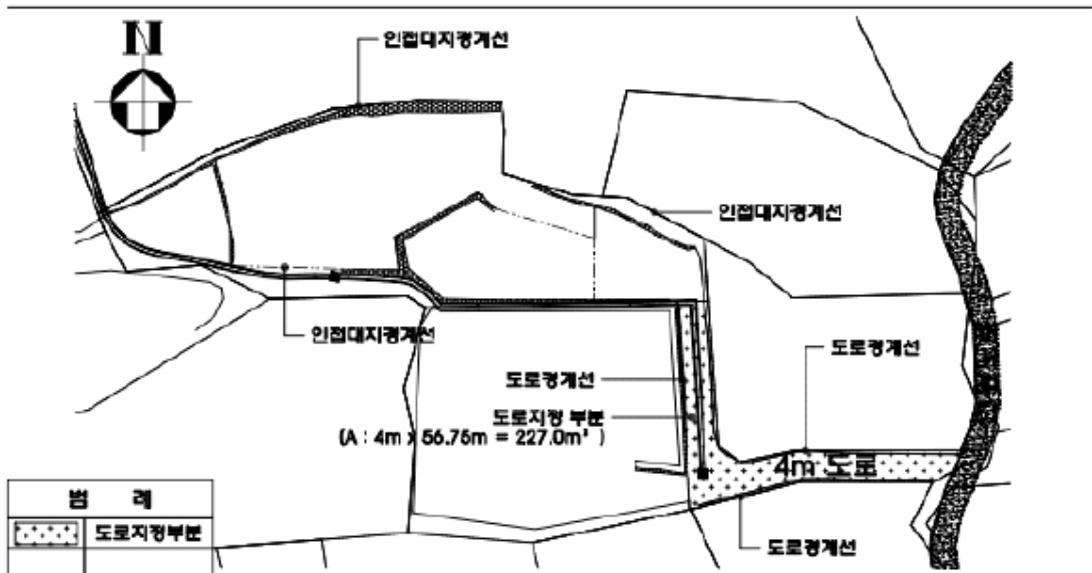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범례	
	도로지정부분

현황도

축척 [A4] 1 / 800, [A3] 1 / 400

현황도

축척 [] 1 / 800, [] 1 / 400